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2월 4일

나. 발 의 자 : 강승수, 권기만, 김근아, 김복자, 김태근
박세진, 손홍섭, 안주찬, 양진오, 정하영
허 복(11인)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2월 12일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강승수 의원

나.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강 보호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권라의무와 시장의 책무규정(안 제2조 ~ 제4조)
- 금연구역의 지정 등과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금연활동 지원 및 금연 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8 ~ 제9조)
-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안 제10조)
-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부칙 제2조)

라. 참고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4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시민의 권리·의무 등(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안 제7조), 금연활동 지원(안 제8조), 금연지도원(안 제9조), 과태료(안 제10조) 등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공원 244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94개소, 버스정류장 712개소, 택시승강장 29개소, 주유소 128개소 등 총 1,20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